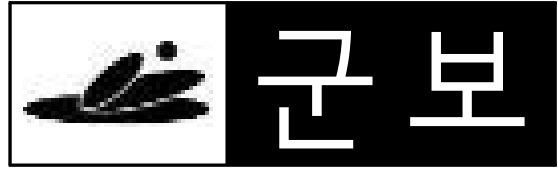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01호 2020. 11. 30.(월)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0-269호 : 예산군 관리계획(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20-270호 :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2
- 예산군 고시 제2020-273호 :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 예산군 고시 제2020-27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
- 예산군 고시 제2020-280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8
- 예산군 고시 제2020-286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0-1811호 : 폐기공인 공고 15
- 예산군 공고 제2020-1842호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7

입 법 예 고

- 예산군 공고 제2020-1809호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8
- 예산군 공고 제2020-1838호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6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예산군 고시 제2020-269호

예산군 관리계획(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1. 예산군 광시면 14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예산군(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30.

예산군수

가.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항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노외주차장	광시면 신흥리 145번지 일원	-	증)3,092	3,092	-	

○ 공공·문화체육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면적: 3,09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한중의사 기념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의 도모

나.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따로붙임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예산군 고시 제 2020-270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예 산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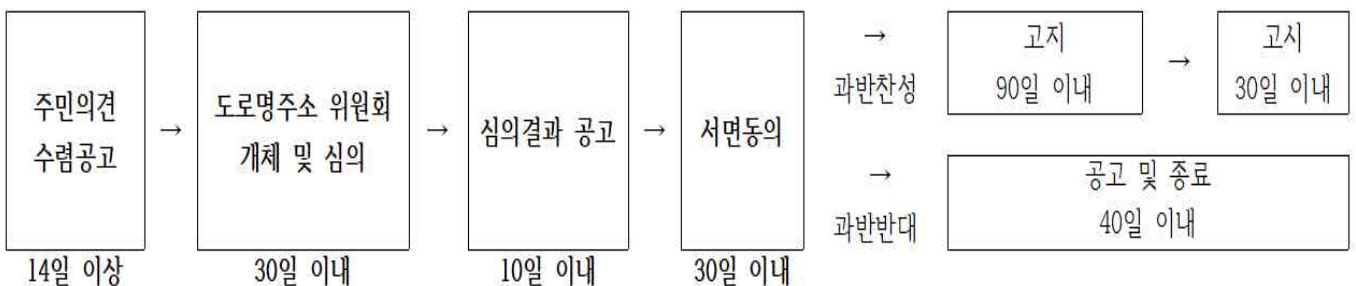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 1. 고시일 : 2020. 11. 16.(월)
- 2. 고시방법 : 예산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게재
-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전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비고
	부여	변경	폐지	
4		4		종속구간 도로명변경 4건

4. 도로명의 부여절차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절차)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수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339-7167~7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은 예산군 홈페이지 참조.

예산군 고시 제2020-273호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0-458호(2020.11.10.)로 결정(변경) 고시된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산군수

1.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2.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1/1,200) : 게재생략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Ⅰ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예산도시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지역	총계		23,128,314.8	-	23,128,314.8	100.0
	주거 지역	소계	3,232,184.5	-	3,232,184.5	1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7,695.5	-	257,695.5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3,981	-	2,673,981	11.6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036	-	129,036	0.6
		준주거지역	171,472	-	171,472	0.7
	상업 지역	소계	261,517	-	261,517	1.1
		일반상업지역	261,517	-	261,517	1.1
	공업 지역	소계	633,363.3	-	633,363.3	2.7
		일반공업지역	526,137.3	-	526,137.3	2.3
		준공업지역	107,226	-	107,226	0.4
	녹지 지역	소계	19,001,250	-	19,001,250	82.2
		보전녹지지역	1,722,330	증) 62,931	1,785,261	7.7
		생산녹지지역	2,670,965	-	2,670,965	11.6
자연녹지지역		14,607,955	감) 62,931	14,545,024	62.9	

※기정 : 충청남도 고시 제2018-94호 예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2018.03.30.) 및 예산군 고시 제2018-123(2018.08.10.)

나. 삼교도시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지역	총계		7,206,971.2	-	7,206,971.2	100.0
	주거 지역	소계	793,602	-	793,602	11.0
		제1종일반주거지역	598,335	-	598,335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267	-	195,267	2.7
	상업 지역	소계	99,518	-	99,518	1.4
		일반상업지역	99,518	-	99,518	1.4
	공업 지역	소계	1,691,373	-	1,691,373	23.5
		일반공업지역	1,634,659.3	-	1,634,659.3	22.7
		준공업지역	56,713.7	-	56,713.7	0.8
	녹지 지역	소계	4,622,478.2	-	4,622,478.2	64.1
		보전녹지지역	-	증) 45,000	45,000	0.6
		생산녹지지역	1,480,482	-	1,480,482	20.5
		자연녹지지역	3,141,996.2	감) 45,000	3,096,996.2	43.0

※기정 : 충청남도 고시 제2018-94호 예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2018.03.30.) 및 예산군 고시 제2018-123(2018.08.10.)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가. 예산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예산읍 산성리 98-4과 일원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19,799	80% 이하	· 장기미집행시설인 예산공원의 해제지 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되, 주민제안으로 도 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일부 제외
2	예산읍 주교리 170-25과 일원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10,785	80% 이하	· 장기미집행시설인 중앙공원의 해제지 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3	예산읍 산성리 109-7과 일원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32,347	80% 이하	· 장기미집행시설인 중앙공원의 해제지 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삼교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삼교읍 신가리 260-78전 일원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45,000	80% 이하	· 장기미집행시설인 삼교공원의 해제지 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예산군 고시 제2020-27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0.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27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길 29-7	20201120	신축	20091113	지형이 가지처럼 생겨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175-4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길 83	2020112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내량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575-10, 575-11, 575-17, 575-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396-9	20201120	신축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30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가야길 9-7	2020112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옥계리)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853-5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377	2020112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이티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6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31번길 5	20201120	신축	20091113	임성로 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225-1, 225-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중예길 122	20201120	신축	20091113	조곡리와 중예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목리 1759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예학3길 4-11	20201120	신축	20151210	도로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결되는로급 도로명칭을 반영	
9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131-1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55	20201120	신축	20201102	'참샘골'이라 불린 옛지명 반영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1길 26-1	20201117	건축물 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31번길 5	20201116	건축물 멸실	

예산군 고시 제2020-28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3.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7~69)으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10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2길 73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1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99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3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1길 8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5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136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6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148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8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162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43-9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2길 12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가래울길 5-20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2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가래울길 5-6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가래울길 34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정동호가옥
1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가래울길 42	20201123	종속구간본구간화	

예산군 고시 제2020-2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770-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331-38	20201127	신축	20091113	국사봉을 경유하는 도로로 자연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56-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10-17	20201127	신축	20091113	덕산온천지구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6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4	20201127	신축	20091113	봉산면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구암리 23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구암길 123-13	202011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구암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66-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1길 7	202011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연리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백운길 221-10	20201127	신축	20091113	지형이 바구니 같다하여 붙여진 옛지명 바구니, 박운동에서 유래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88번길 87-21	20201127	신축	20091113	벚꽃로 3,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43-9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1길 6-6	202011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별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568, 147-1, 532-1, 532-2, 534-1, 535-2, 536-1, 536-2, 536-4, 537-3, 56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2길 35	202011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복당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7-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101	20201127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351-2, 352-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120	20201127	신축	20091113	주령리와 계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132-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53-12	20201127	신축	20201102	'참샘골'이라 불린 옛지명 반영	
1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132-7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53-10	20201127	신축	20201102	'참샘골'이라 불린 옛지명 반영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5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52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5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7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10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1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17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1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18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1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19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2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2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2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27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3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34-16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4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4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4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43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5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가길 5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7-10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원효봉길 38-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60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원효봉길 38-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58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4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50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46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1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4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44-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44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40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4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9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4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7-4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7-6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1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8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2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3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2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2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28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3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2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25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26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3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2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나길 21	20201127	종속구간 본구간화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4	20201124	건축물 멸실 후 재건축	

예산군 공고 제2020-1811호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9조(공고)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 산 군 수

- 공인 폐기 사유 : 예산군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른 폐기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20. 11. 30.(월)

폐기 공인내역

【재무과】

구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개각) 및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예산군신청사 건립기금출납원인	1.8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군 신청사 건립 완료	
폐기 공인	예산군신청사 건립기금운용관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군 신청사 건립 완료	

예산군 공고 제2020 - 1842호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조 례 명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과 관리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신청서·허가서 등 서식 규정
- 제3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에 다른 준수사항을 규정
- 제4조(유물 구입공고), 제5조(유물 구입절차), 제6조(유물 매도신청) 유물구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 제7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 규정
-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대여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장((우)32407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시설사업소(전화 041-339-8232, 팩스 041-339-8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라. 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붙임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대상 유물을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제6조(유물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군수는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접수된 유물매도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선정평가서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되, 상, 중 평가를 받은 유물 중 선정
2.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의견서를 작성
3.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
 -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유물대장)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성별)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용시설	촬영장소 및 행사장소(m ²)		
	부속설비		
사용기간		반입설치일	
		행사기간	
		철거반출일	
행사 및 촬영내용	행사 및 촬영명		
	행사 및 촬영목적		
	주요내용		
	출입예정인원		
	반입품(전시품)의 종류·규격·수량		

- ※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허가서

(전면)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사용시설	촬영장소 및 행사장소(m ²)			
	부속설비			
사용기간		반입설치일		
		행 사 기 간		
		철거반출일		
행사 및 촬영 내용	행사 및 촬영명			
	행사 및 촬영목적			
	주요내용			
	출입예정인원			
	반입품(전시품)의 종류·규격·수량			
	사 용 료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후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사용자는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윤봉길의사기념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해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상.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6. 상기 허가조건 위반 및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합니다.
7.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물 사용시 해석상 의견 차이는 군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결 재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 기간	내 용	담당	과장	소장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가통지서

단 체 명:

성명(단 체 명):

주 소(전화):

신 청 내 용

1. 행사 및 촬영명:

2. 사용시설: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

5. 주요내용:

불 가 사 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전면)

매 도 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 도 희 망 유 물	유물명칭					
	수 량			시 대		
	유물크기					
	소장경위					
	특 징					
	희망매매가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예 산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유물접수증	접수일		소장자	(인)	인수자	(인)
유물반환증	반환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후면)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않아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유물선정평가서

대상 유물	명 칭			종 별			수 량		
	크 기			재 질			특 징		
	과거신청유무			유 / 무					

사 진
(3"×5")

평가 사항	국 적			시 대			작 가		
	용 도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본인요구액	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①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별지 제7호서식]

유물평가의견서

				구분	구입□/기증□/기탁□/대여□			
대상 유물	명 칭				종 별		수량	
	크기			재질	특징			
유물 가치 평가 의견								
평가금액		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별지 제8호서식]

유물최종평가심의서

대상유물	명 칭		종 별		수량		
	크기		재질	과거신청유무	유 / 무		
평가사항	국적		사 진 (3"×5")				
	시대						
	작가						
	용도						
	보존상태	상					
		중					
		하					
	국가보존가치	유·무					
평가금액	금 원 (₩)						
평가의견							
자체평가액		금 원 ~ 금 원					
<p>위 와 같 이 평 가 함</p> <p>년 월 일</p> <p>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위원 (인)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위원 (인)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위원 (인) </p>							

[별지 제9호서식]

유 물 대 장

(페이지:)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소 계 건 점 / 누 계 건 점										

[별지 제10호서식]

(전면)

유 물 카 드

유물번호		분류 번호		소장 구분		현존 여부	
명 칭	(한글)			수 량			
	(한자)						
				(영문)			
국적/시대				작자/제작처			
재 질				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				무게			
명 문				구분:	내용:		
발굴일자	//	//	출토지				
보존처리				기간:(시작)	(종료)		
	내용:						
유물상태	전시순위		입수일자		입수경위		
입수처 및 주소							
가 격		보험		문화재지정		지정일자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				원 판:			
등록일자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사 진							

(후면)

보 관 장 소

유물번호:

이동일자	보관구분	수량	보관처	현수량	활용내역

[별지 제12호서식]

유물대여허가서

제 호

대여 신청 기관	기관명		신청부서	
	신청인	관계	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	유 물 명 칭	유 물 수 량	비 고	
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				
<p>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예 산 군 수 (인)</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공고 제2020 - 1809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섬김택시 운영 대상마을을 확대하고자 함.
-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섬김택시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상마을의 확대
- 대상마을의 운행구간 및 지원 금액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20.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 주소: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6층), 우편번호: 32435)에게 서면이나 메일(shinyj8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이리		후사리	
	상성1리		지석리	
	성2리		증곡리	
	신가2리		둔2리	
	용동3리		대동리	
	상하2리		낙상1리	
	두5리		낙상2리	
	안치리		고도리	
	신가4리		시동리	
대술면	시산1리	봉산면	옥전리	
	마전1리 삼바실		구암리	
	시산2리 사쟁이		화전1리	
신양면	무봉리		화전2리(고상골)	
	황계리		용안리(안용안)	
	서계양1리		마교리(진골)	
	차동리 불문리		사1리	
	여래미리 고재고랑		사2리	
	하천리 산막		용3리	
광시면	구례리		고덕면	지곡리
	용두리	구만3리		
	운산1리	탄중리		
대흥면	지곡리	신암면		오산2리
	송지대야리			조곡1리
	탄방리			용궁2리
	교촌1리			신석1리
	교촌2리			신원1리

[별표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이리		후사리	
	상성1리		지석리	
	성2리		증곡리	
	용동3리		둔2리	
	상하1리 초막골		대동리	
	상하2리		낙상1리	
	두5리		낙상2리	
	안치리		고도리	
	신가1리 꽃산마을		봉산면	구암리
신가2리	옥전리			
신가4리	시동리			
시산1리	효교2리			
대술면	마전1리 삼바실	화전1리		
시산2리 사쟁이	무봉리	화전2리(고상골)		
신양면	황계리	용안리(안용안)		
	서계양1리	마교리(진골)		
	차동리 불문리	고덕면		사1리
	여래미리 고재고랑			사2리
	하천리 산막		용3리	
	광시면		운산1리	신암면
운산2리			구만3리	
구례리			탄중리	
마사리			오산2리	
용두리			조곡1리	
대흥면	지곡리		오가면	용궁2리
	송지대야리			신석1리
	탄방리	신원1리		
	교촌1리			
	교촌2리			

[별표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54개 마을	216회		45,900	97,000	38,100	30,80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300	3,900	
		이리	외뜸말	8,300	1,300	7,000	
		상성1리	마을회관	7,800	1,300	6,500	
		성2리	마을회관	6,800	1,300	5,500	
		신가2리	마을회관	3,600	1,300	2,300	
		용동3리	마을회관	4,800	1,300	3,500	
		상하2리	마을회관	5,300	1,300	4,000	
		두5리	마을회관	4,800	1,300	3,500	
		안치리	마을회관	8,500	1,300	7,200	
		신가4리	마을회관	7,300	1,300	6,000	
대술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삼바실)	삼바실	14,000	4,200	9,800	
		시산2리(사쟁이)	사쟁이	6,800	2,000	4,800	

[별표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59개 마을	236회		505,000	115,300	388,900	30,80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이리	외뜸말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6,800	1,500	5,300	
		신가2리	마을회관	3,600	1,500	2,100	
		용동3리	마을회관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4,800	1,500	3,300	
		두5리	마을회관	5,300	1,500	3,800	
		안치리	마을회관	8,500	1,500	7,000	
		신가4리	마을회관	8,500	1,500	7,000	
대술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3,300	1,500	1,800	
		마전1리(삼바실)	삼바실	7,300	1,500	5,800	
		시산2리(사쟁이)	사쟁이	6,500	2,100	4,400	

산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300	6,7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300	6,8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300	5,4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300	8,7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300	7,7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300	6,800	
광사면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300	5,6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300	5,700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300	6,400	
대항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2,900	6,9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300	10,3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000	9,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응봉면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300	3,500	2,800
	후사리	안뫓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300	3,900	2,800
덕산면	증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300	2,700	2,800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300	8,7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300	12,3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300	14,500	
봉산면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300	14,200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300	5,7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300	5,7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300	6,4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300	4,200	2,8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300	4,800	2,800
	화전2리 (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300	2,100	2,800
	웅암리 (안용안)	안용안	고덕정류소	9,300	1,300	5,2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300	3,9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300	4,5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300	4,5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300	8,2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300	4,5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300	6,400	
산양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신례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300	5,7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300	4,2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을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일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산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광사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대항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3,100	6,7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500	10,1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200	9,2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응봉면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뫓질	예산역	11,000	3,500	7,5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덕산면	증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봉산면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 (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웅암리 (안용안)	안용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산양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500	5,3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900	6,1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300	7,200	
	용궁2리	마을회관	신례원정류소	10,000	3,200	6,8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을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일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붙임 1**관련법령(발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 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예산군 공고 제2020-1838호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확대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어르신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6대에서 반기별 9대로 확대 지원 (제명, 안 제3조)
 - 반기별 6매 ⇒ 반기별 9매

4. 입법예고기간 : 2020. 11. 30. ~ 12. 2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주민복지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4층), 우편번호 : 32435)에게 서면이나 메일(mms80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41)339-7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의 부분 중 “반기별 6매를 지급한다.”를 “반기별 9매를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내용 등) (생 략)</p> <p>1. (생 략)</p> <p>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u>반기별 6매를 지급한다.</u>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내용 등)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반기별 9매를</u> ----- ----- -----.</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1】

관 계 법 령 발 취**노인복지법**[시행 2018. 9. 14.]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1.1.][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붙임 2】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 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지원금은 1매에

3,000원으로 하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9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4년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대상자를 추정하여 소요예산 판단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 수 × 3,000원 × 18매 (균비 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합 계
만 70세 이상 인구 수 (a)	17,781명	18,078명	18,375명	18,644명	72,878명
지급금액 (b)	54	54	54	54	54
□ 총비용(a×b)	960,174	976,212	992,250	1,006,776	3,935,412

4. 덧붙이는 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사용 현황에 따라 제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